

【소방법령Ⅳ】

1.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분(副本)을 송부해야 하고, 청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처분 및 통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 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징계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임용권자와 징계처분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 처분권자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정직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총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위원이 된다.
-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하고, 그 방법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한다.
- ③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국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임용시기와 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임용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다음 날이다.
- ③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임용일은 사망일의 전날이다.
- ④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일은 사망일의 전날이다.

【 소방법령Ⅳ 】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로 구분하며, 소방서 소속 소방위 이하 계급의 2차 평정자는 소속 소방서장이다.
- ② 근무성적평정점이 45점 이상~55점 미만인 평정점일 경우 분포비율은 40퍼센트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 ③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소방위와 소방장 계급의 기본경력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이고, 초과 경력은 기본경력 전 1년간이다.
- ④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급 상급 감독자가 된다.

6.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또는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③ 소방공무원은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 휴무일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과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7.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함)

- ① 소방령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 ② 소방경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③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④ 소방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8. 「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 한다.
- ②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 ③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 ④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파견근무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소방법령Ⅳ 】

1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순서 중 두 번째는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이다.
- ②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③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④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 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은 0.5점,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의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1.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
- ③ 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④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12. <보기>는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에 해당하는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가.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에서 이미 (㉠)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분의 1 이내로 한다.
- 나.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다.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라.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 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① 21
- ② 22
- ③ 23
- ④ 24

【소방법령Ⅳ】

13.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상 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4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혼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시행규칙상 혼재 기준만 고려하며, 제시된 화합물은 모두 위험물로 간주함)

- ① 황화인 100 kg과 아조화합물 100 kg의 혼재
- ② 칼슘의 탄화물 300 kg과 적린 100 kg의 혼재
- ③ 나이트로화합물 100 kg과 알킬알루미늄 10 kg의 혼재
- ④ 금속의 인화물 300 kg과 질산(비중 1.49 이상) 300 kg의 혼재

1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함)와 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등에 대해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변경허가 신청과 별도로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신청서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 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와 관련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용도폐지 신고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용도폐지신고서와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며, 당해 신고서의 처리기간은 5일이다.
- ③ 용도폐지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 ④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의무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을 말하며, 여기서 관계인이라 함은 소유자만을 의미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곳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시에 저장 또는 취급의 중요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저장 또는 취급의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③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당해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④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 조례의 규제를 받는다.

【 소방법령Ⅳ 】

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 ② 소방청장은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수시평가의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④ 최초평가는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 혹은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최대 5억리터의 등유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자체소방대에 필요한 자체소방대원의 수와 전체 화학소방차 중 포수용액 방사차의 대수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제조소는 상호응원 협정을 맺지 않았으며, 대수와 대원의 수는 규정상 최소 수를 의미함)

	자체소방대원의 수	포수용액 방사차의 대수
①	10인	2대
②	15인	2대
③	15인	3대
④	20인	3대

[20~21] <보기>는 2025년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에서 한 위험물운반차를 정차시켜 검사한 결과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가. 해당 위험물운반차 사진

나. 내용적 200 L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0개의 위험물 시험 및 판정 결과: 제4류 위험물

- 1) 인화점 19℃(1기압)
- 2) 액체 판정
- 3) 비수용성 판정

(단, 모든 드럼의 내용물은 동일하며 각각 200 L씩 수납됨)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가 수납된 가스용기 10개

(단, 고압가스가 수납된 가스와 가스용기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해당 위험물의 위험등급과 드럼 1개의 최대 수납량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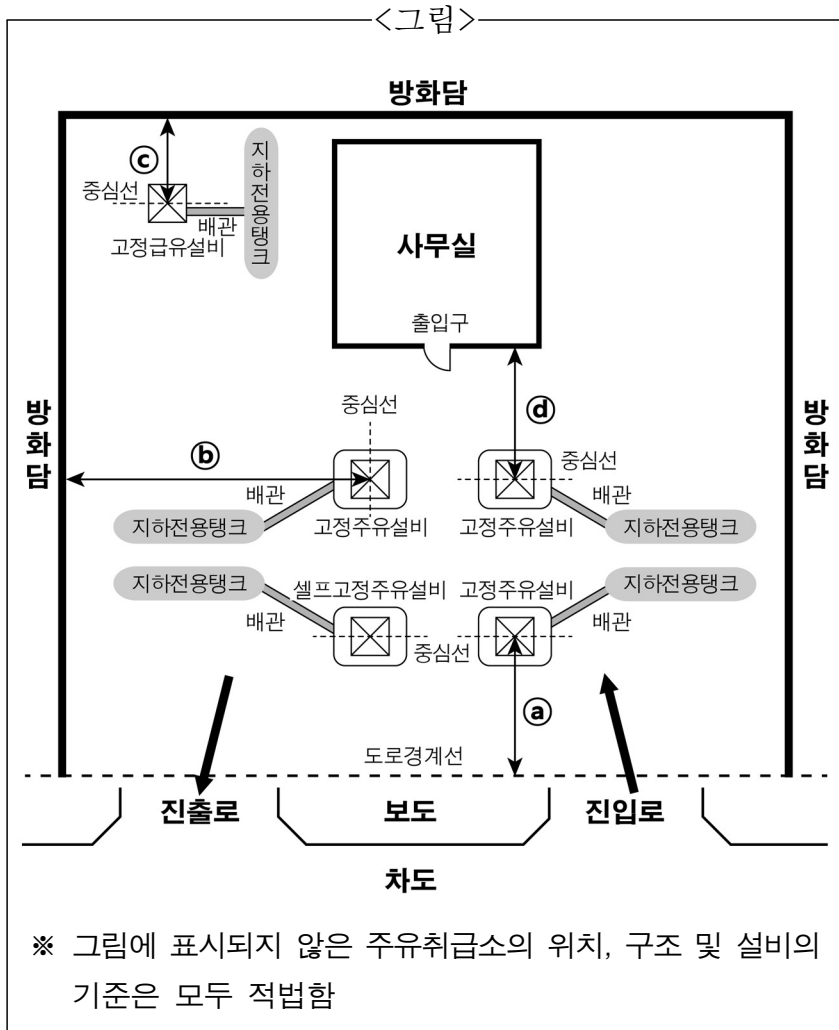
	위험등급	최대 수납량(L)
①	I	196
②	I	198
③	II	196
④	II	198

21. 운전자가 ‘고압가스가 수납된 가스용기’와 ‘위험물을 수납한 드럼’을 같이 운반한 경우, 위반과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동승자 없음)

	위반 기준	벌칙 기준
①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위험물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④	위험물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법령Ⅳ】

[22~23] 다음은 주유취급소의 평면 그림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사무실 출입구 외의 개구부는 없음)



22. 해당 주유취급소의 최대 허가수량으로 옳은 것은?
(단, 고정급유설비, 고정주유설비 및 셀프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된 지하전용탱크 외에는 위험물 없고 사무실 이외의 건축물은 없음)

- ① 100,000 L
- ② 150,000 L
- ③ 200,000 L
- ④ 250,000 L

23. ㉑, ㉒, ㉓와 ㉔의 최소 거리 값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방화담과 벽에는 유리 부착 없음)

- ① 9
- ② 10
- ③ 11
- ④ 12

24. <보기>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허가 현황이다. 해당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허가 현황에 따른 소화난이도 등급과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로 옳은 것은? (단, 표에 제시된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의 배수만 적용함)

<보기>

가. 일반취급소(옥내)의 위험물 허가 현황

유별	품명	허가수량(L)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10,000
	제2석유류 비수용성	50,000
	제2석유류 수용성	4,000

나. 표에 제시된 허가수량 이외의 위험물은 없음
다.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1호에 해당함

	소화난이도 등급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①	I	포소화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I	물분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II	포소화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II	물분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송취급소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입구를 철거하는 경우
- ② 방호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 ③ 옥내소화전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철거하는 경우